

## 제2회 녹용과학심포지엄

### 주제 발표 VI

# 양록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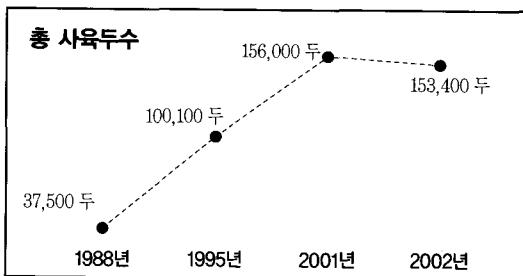
정 규 성 소장 / 축산유통연구소

## I. 양록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 1. 양록산업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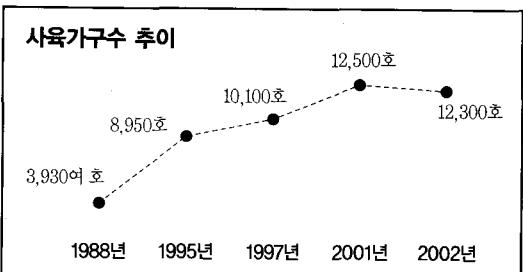
#### 가. 사육동향

##### (1) 사육두수추이



1995년도에는 1988년대비 2.7배나 크게 증가한 이후 2001년 156,000두 까지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2002년도에는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 (2) 사육가구수 및 규모별 사육두수 추이



#### 규모별 사육두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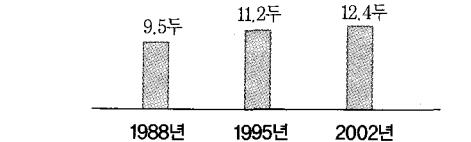
##### 〈50두 미만 사육농가 호수 비중〉

1988년	98.6%
1995년	97.7%
2002년	96.2%

##### 〈50두 미만 사육농가의 사육두수〉

1988년	87.7%
1995년	83.3%
2002년	75.0%

##### 〈호당 사육두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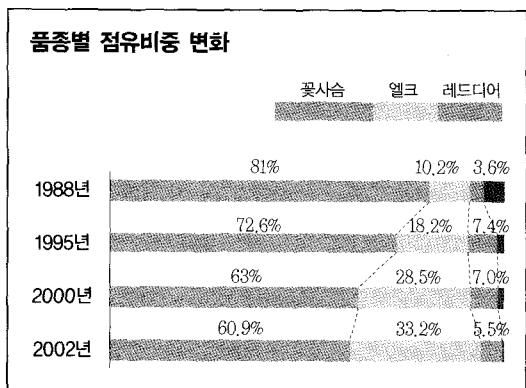


타축종은 농가호수의 감소폭이 큰데 비하여 사슴 사육농가수는 증가세를 보여왔고, 호당 사육두수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사육두수, 사육가구수, 호당 사육두수, 모두정체 상태임.

#### (3) 품종별 사육동향

품종별 사육두수 추이는 꽃사슴이 1988년 3만여두에서 2002년에는 93,000두로 약 3배 증가 하였으나, 엘크는 같은 기간에 무려 13배나 증가하였고 레드디어는 1988년 1,350여 두에서 2002년에는 8,480여두로 6배 수준이

증가됐음. (녹용 생산량 우선고려 결과)



## 나. 녹용유통동향

### (1) 녹용수급동향

(가) 2002년도 녹용 총수급량은 200여톤(건 녹용환산)이며 이중 국내산은 31%수준으로 2000~2001년도의 36%선에서 감소세를 보였으며, 수입녹용은 건녹용환산 138.5톤으로 뉴질랜드산이 63%를 점유하고 있음.

### (2) 녹용유통실태 및 유통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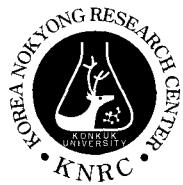
#### (가) 녹용유통실태

- 사슴에서 채취한 축산물 개념의 녹용은 명문화된 사항이 없고, 통상적으로 녹용은 한약으로 통용되고 있어, 양록산업의 주산물인 녹용을 상품화하려면 생녹용을 건조하고 절단하는 등 기초적인 가공이 필수적이나 건조 및 절단은『약사법』의 의약품 제조 행위로 규정되어 건녹용의 가공 및 판매는 약사 또는 한약업자만이 할 수 있음.

- 현재는 1994년의 관계부처 유권해석과 한약규격화 업무지침에 의지 생녹용을 단순 건조, 절단하거나 판매 행위는 농산물의 가공 판매행위로 인정받고 있어『약사법』에 저촉되지 않고 있음. (단 직매장, 한약시장, 한의원, 한약방 등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원료의 약품 제조허가를 획득하여야 함.)

(단위:kg)

년도	합계 (건용환산)	생 녹 용			건 녹 용			자급율 (%)
		계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1998	(110,744)	143,076 (43,356)	120,516 (36,520)	22,560 (6,836)	67,388	-	67,388	33.0
1999	(170,366)	191,584 (58,056)	111,126 (33,675)	80,458 (24,381)	112,280	-	112,280	19.8
2000	(146,637)	271,693 (82,332)	174,587 (52,906)	97,106 (29,426)	64,305	-	64,305	36.1
2001	(156,002)	280,939 (85,133)	190,205 (57,638)	90,734 (27,495)	70,869	-	70,869	36.9
2002	(200,255)	296,794 (89,938)	203,519 (61,673)	93,275 (28,265)	110,317	-	110,317	30.8



## 제2회 녹용과학심포지엄

### 주제 발표 VI

#### (나) 국내산녹용의 유통경로

- 국내에서 생산되는 녹용은 생산지에서 직접 소비자에게 생녹용 상태 또는 중탕으로 판매하는 경로가 주종임(64%). 절각된 녹용의 24%는 중간 상인을 통하여 주로 중탕용으로 도매 판매됨(24%)

- 그 외 위탁판매, 수매가 10%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한약으로 한의원이나 한약국으로 유통되는 물량은 3%정도로 추정됨.

#### (다) 수입녹용의 유통경로

- 수입되는 녹용은 사단법인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산하의 「수입한약재 품질검사소」 및 8개 민간기관에서 시행하고 있음.
- 검사를 통과한 수입녹용의 70%는 도매상을 통하여 한의원이나 약국으로 유통되며 나머지 30%는 직접 한의원이나 약국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유통됨.

## 2. 양록산업의 문제점

### 가. 녹용 생산의 문제점

#### (1) 가격경쟁력 저위

##### (가) 양록농가 규모의 영세성

부업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호당 사육두수가 12두수 수준이며,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전체 농가의 3.8%수준인 470여 호임.

##### ○ 규모의 영세화로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합리화 추구 지난

##### ○ 상품성 제고 및 판매촉진 활동저조 불가

#### 피함.

(경쟁국비교 : 뉴질랜드 호당 450두, 북미주 엘크 40여두, 중국 200여두 수준)

#### (나) 사료비 과다

○ 사료비가 경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0~70%수준으로 생산원가부담 가중.

#### (다) 두당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 미흡.

#### (2) 녹용 생산성 저위

- 북미의 엘크의 녹용생산이 평균 12kg, 국내는 8~9kg수준. 중국 꽃사슴 평균 3~5kg, 국내는 1kg수준.

#### (3) 생산자 자율수급 안정 기능미비 및 위험 관리 체계 부재

- 가격 안정을 위한 수급 조절제도와 보험 재해보상 복구지원 제도 미비.

### 나. 녹용품질의 문제점.

#### (1) 고품질 녹용생산 체계미흡

##### (가) 급여사료 차별화등 고품질 녹용생산 체계 미정립

##### (나) 품종별 녹용규격, 등급화 미비

##### (다) 생녹용 절단 및 보관관리에 대한 매뉴얼 미비

#### (2) 소비자 신뢰도 재고를 위한 연구개발미비

##### (가) 녹용의 성분검사, 임상, 생체 실험 등을 통한 신뢰도 제고

##### (나) 소비자 연령별, 체질별, 용도별 품질 적용 차별화 방안 등

##### (다) 녹용의 품질 표준화 및 인증제도

- (라) 수입산 녹용과의 비교분석 실험, 연구 등  
(3) 국산녹용차별화에 관한 학계, 관련단체  
(조합, 협회등), 연구기관, 정부 등과 한의학계,  
한약업계간의 협의 · 연구 · 지원체계 부재.

#### 다. 녹용유통의 문제점

##### (1) 판매처 확보의 한계성

- 세계최대 녹용시장 보유국임에도 가격 경쟁력 저위로 주 소비시장인 한약시장에 진입하지 못함에 따른 판매처의 한계.

##### (2) 유통의 낙후성

- 국내산 녹용의 대부분이 농장에서 생녹용, 중탕 등으로 직거래되고 있어 불안한 유통구조 탈피 지난.

##### (3) 정보수집 취약성과 홍보체계 미비

- 공식유통 채널 부재로 녹용유통, 소비 등에 관한 통계, 정보수집, 전달기능이 취약함.

- 국내 양록산업 특성상 조합, 협회기능 비활성화 수준에 머물러 홍보 기능이 취약함.

##### (4) 수입녹용의 부정유통

- 원료 의약품, 가공 수출용 원료에 한하여 수입 허용된 외국산 생녹용이 국내산으로 둔갑 부정 유통됨에 따른 국내산 사육농가 피해 심각.

##### (5) 절편 녹용수입에 따른 시장 잠식 및 녹

용전체에 대한 신뢰도 저하 우려

#### 라. 정책지원의 소홀

- (1) 양록산업의 국내축산업 비중을 감안한 정부차원의 정책 부재.

- (2) 양록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수립 및 지원 유도 노력 미흡

- (생산자단체, 관련협회 등의 자주적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수립 유도제안 등)

#### 마. 관련 법규의 문제점

- (1) 축산법상 위상재고 (제2조) 정의에 사슴 명기누락

- (2) 축산물로서의 생녹용, 규정 및 유통에 관한 법률적 조치 미비

- (3) 축산법상 개량대상 가축 및 친환경 축산 직불제 대상에서 누락

- (4) 소득세법상 일반 가축에 적용되는 부업 축산의 소득세 면제 대상 제외

- (5) 산림내 사슴방목관련 법규개선

#### 바. 수입녹용 통관 유통의 문제점

- (1) 수입녹용의 검사제도 및 유통관리 체제 강화 필요

- (2) 관세율 조정과 부정 유통 단속 강화